

자동화평가 결과에 대한 설명요구서(제40조의5제1항 관련)

1. 신용평가주체의 대응권 개요

개인인 신용정보주체는 「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」 제36조의2제1항 및 제2항 및 그에 따른 하위법령에 따라 개인신용평가회사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용정보 제공·이용자에 대하여 개인신용평가,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거래의 설정 및 유지 여부, 내용의 결정, 그 밖에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로만 처리하면 개인신용정보 보호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일정한 행위에 대하여 자동화평가를 하는지 여부 및 자동화평가를 하는 경우 그 결과, 주요기준, 기초정보의 개요 등을 설명해줄 것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. 또한, 자동화평가 결과의 산출에 유리하다고 판단되는 정보의 제출, 또는 자동화평가에 이용된 기초정보 등의 정정·삭제 및 이에 따른 자동화평가 결과의 재산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.

다만, 다른 법령 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, 해당 신용정보주체의 요구에 따르게 되면 금융거래 등 상거래관계의 설정 및 유지 등이 곤란한 경우, 고객이 정정·삭제를 요청한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, 동일한 금융거래에 대해 3회 이상 반복적으로 법 제36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권리를 행사하는 경우에는 금융회사가 고객의 요청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.

2. 요청 내용

_____은(는) 귀 사의 상기 설명 내용을 듣고 이해하였으며, 이에 따라 아래 내용에 대해 설명을 요구합니다.

- ① 자동화평가의 결과 (신청인 희망 신용평가 결과 : 금융회사 안내를 받아 기재)
- ② 자동화평가의 주요 기준
- ③ 자동화평가에 이용된 기초정보의 개요

< 신청자 인적사항 >

성명		주민등록번호	-
휴대폰		이메일	

※ 이와 관련, 본인은 귀 사가 신용정보집중기관 또는 개인신용평가회사, 개인사업자신용평가회사 또는 기업신용조회회사 등으로부터 본인의 개인신용정보를 제공받는 것에 동의합니다.(동의 ☐ / 비동의 ☐)

20 . . .

_____ (서명/인)